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일자리정책과-7124
등록일자	2016.4.5.
결재일자	2016.4.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기업지원팀장	일자리정책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정미선	임경구	박춘봉	김용운	주윤중	04/06 신연희
협조자	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				

-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 도모를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계획 (안)

개정사유

-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의 종기(終期)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
 - 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: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
- 관련 법령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체계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기금운용의 공정성 도모

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종기(終期)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(신설)
- 관련 법령 제명 변경 반영
 - 변경전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
 - 변경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조문체계 및 용어 정비

2016. 4.

강 남 구
(일 자리 정 책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『지방자치법 제142조』 및 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』 •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』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추진경위 :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 도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0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0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종로구, 중구 등 서울시 24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검토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-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공정성 도모를 위한 -

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계획 (안)

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종기(終期)명시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 등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개정 사유

-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의 종기(終期)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
 - ※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: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
- 관련 법령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체계 반영 등 조례 정비를 통해 기금운용의 공정성 도모

II 주요 내용

-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개정범위 : 일부 개정
-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조(목적)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와 「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 」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<u>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 의 육성발전과	제1조(목적)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와 「 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<u>소상공인</u> 의 육성발전과	법령 제명 변경
제4조(기금의 용도)① <u>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</u>	제4조(기금의 용도) <u>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</u> <u>1.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</u>	○ 조문체계 조정

<p>② <u>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</u></p> <p>③ <u>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</u></p> <p>④ 「은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의 협력 기업 자금 용자에 관한 일부 보전</p>	<p><u>자금으로 용자하거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</u></p> <p><u>2.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</u></p> <p><u>3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의 협력 기업자금 용자에 관한 이차액 일부 보전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</u></p>	<p>○은행법개정(2010.5.17.)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</p>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④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<u>금융기관</u>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</p> <p>④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을 <u>은행</u>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</p>	<p>○은행법개정(2010.5.17.)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</p>
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5년</u>으로 하되,</p>	<p>제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0년 12월 31일</u>로 하되,</p>	<p>기금존속기한의 종기(終期) 명시</p>
<p>제6조(<u>기금운용위원회</u>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<u>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<u>1. 용자대상자의 선정</u></p> <p><u>2. 용자액의 결정</u></p> <p><u>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, 재무과장, 사회복지과장,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</p>	<p>제6조(<u>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</u>)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</p> <p><u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</u></p> <p><u>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</u></p> <p><u>3. 용자대상의 선정</u></p> <p><u>4. 용자액의 결정</u></p> <p><u>5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지역경제과장, 재무과장, 사</p>	<p>○위원회 명칭 정비</p> <p>○심의위원회 기능추가 -기금운용계획 수립, -결산보고서 작성, -성과분석</p> <p>○민간전문가 3분의 1</p>

<p><u>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,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에 위원회의</u> 사무를 처리하기</p> <p>④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u></p>	<p><u>회복지과장,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,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위원회의</u>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</p> <p>⑤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u></p> <p>⑥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</u></p> <p>⑦ <u>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</u></p>	<p>이상 (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)</p> <p>위원의 임기 및 연임 신설</p>
<p><u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</u></p> <p>① <u>기금의 용자대상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</u></p> <p>② <u>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<p>④ <u>용자의 절차, 한도액,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u></p>	<p><u>제7조(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)</u></p> <p>① <u>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</p> <p>2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</p> <p>3.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② <u>용자의 절차, 한도액,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u></p>	<p>조문체계 정비</p>
<p>제8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 구청</p>	<p>제8조(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) 구청</p>	<p>은행법개정</p>

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 에 위탁한 경우	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서 기금의 관리를 은행 에 위탁한 경우	(2010.5.17.)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
제9조(용자금의 사용 등)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용자금이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②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라서 용도에 반하여	제9조(용자금의 사용 등) ① 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용자금이 제4조에 다른 용도에 적합하게 ②구청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용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	용어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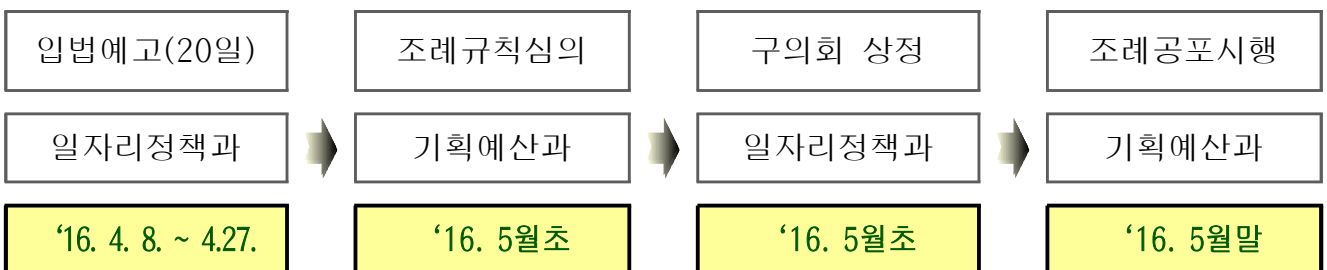
Ⅲ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

- 성별영향분석평가(보육지원과)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: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반영

의견내용	검토결과
<p>▶ 규정의 적정성 검토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서</p>	<p>▶ 반영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서</p>

- 입안심사 : 완료
- 입법예고기간 : 2016. 4. 8. ~ 4. 27.(20일)

Ⅳ 추진 일정



V

행정 사항

- 입법예고 시 구보(매주 금요일 발행) 및 인터넷 게재 별도요청
: 공보실, 전산정보과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. 끝.